

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30일	
신고인	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		
		소재지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			
		(전화번호:)					
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		명칭 및 위치		허가 연월일			
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	행위구분	[] 건축물의 건축		[] 공작물의 설치		[] 토지의 형질변경	
		[] 토지분할		[]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		[] 축목의 벌채 및 식재	
	상세 내용	[] 건축물의 용도변경					
		※ 허가서에 적혀 있는 상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		※ 허가서에 적혀 있는 상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허가조건							
허가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		
허가 변경사항		변경내용					
※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	변경조건		변경 연월일			
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	행위구분	[] 건축물의 건축		[] 공작물의 설치		[] 토지의 형질변경	
	관계법령 조문	[] 토지분할		[]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		[] 축목의 벌채 및 식재	
		[] 건축물의 용도변경					
		※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관계 법령 조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착수 연월일				완료 연월일			

「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첨부서류	1.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(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을 말합니다)	수수료 없음	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통보
신청인		처리기관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						